

2018. 11. 23.(금)
제2차 행정문화위원회

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[자치연수원 소관]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김 호 식

I. 일반회계 세입예산안

- 자치연수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음.

II. 일반회계 세출예산안

- 자치연수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음.

명시이월사업 조서

1. 명시이월(P104)

-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.
- 자치연수원 소관 명시이월비는 행정지원과 1개 사업 450,000천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[표-1]과 같음.

[표-1] 자치연수원 소관 명시이월사업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이월내용	예산액	이월액	사유
조직	세부사업	통계목				
합 계				450,000	450,000	
행정 지원과	연수원 시설관리	시설비 및 부대비	자치연수원 석면교체공사	450,000	450,000	준공시기 미도래

2. 검토의견

- 자치연수원 소관 명시이월은 공무원 교육관과 생활관 등의 석면 교체공사 사업 예산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으나,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